

# 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 수표인도 청구의 소

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표를 인도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20〇〇. 〇. 〇. 피고로부터 금 〇〇〇원을 이자는 연 20%로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, 20〇〇. 〇. ○.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약정하였습니다.
  - 가. 원고는 피고에게 발행일이 백지로 된 액면 금 ○○○원의 당좌수표 1매를 보관시킨다.
  - 나. 원고는 2000. 0. 0.부터 2000. 00. 00.까지 매달 금 000원씩 10회

에 걸쳐 피고에게 금 ○○○원을 변제한다.

- 다. 원고가 위와 같이 20〇〇. 〇〇. 〇〇.까지 위 원금 〇〇〇원을 변제하면 고는 그 동안의 이자를 면제하고 보관중인 위 당좌수표를 원고에게 반환한다.
- 2. 그리하여 원고는 위 약정 후 별지 목록 기재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건네주고, 2000. O. O.부터 2000. OO. OO.까지 매달 금 000원 씩을 피고에게 변제하여 위 대여원금 000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.
- 3. 그렇다면 원고는 위 약정내용에 따른 이행의무를 피고에게 모두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위 당좌수표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를 거절하고 있으므로, 원고는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당좌수표

1. 갑 제2호증 약정서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2통1. 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 2000.
 0.
 0.

 위 원고
 000
 (서명 또는 날인)

### ○○지방법원 귀중



# 목 록

종 류: 당좌수표

수 량:1매

수표번호: 가ㅇㅇㅇㅇㅇㅇ

액 면:금 〇〇〇원

발 행 인 : ○ ○ ○

지 급 지 : ㅇㅇ은행 ㅇㅇ지점.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☞소멸시효일람표 <b>^^</b>
제출부수	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고,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조제1항, 제2항)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채권성립 당시 위 수표가 있었던 장소)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